

직원 학위취득 지원관리내규

제정 2014. 5.13. 내규 제272호
개정 2016.12.30 내규 제329호
2017. 4.26 내규 제344호
2018.10. 1 내규 제386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학위취득 지원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통지서를 소지한 자. 단, 지원접수일(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공고하여 지원접수가 가능한 초일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기준 휴학 등 과정 중단 없이 과정 종료 후 전문학사와 학사는 2년 이내, 석사와 박사는 4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자는 제외한다. (본호개정 2016.12.30.)
2. 지원접수일 기준 인사규정 제24조의3에 따라 징계 기록이 말소된 자. 다만, 징계처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도박,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반윤리적 원인에 한한다. (본호개정 2016.12.30.)
3. 지원접수일 기준 공단에 입사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본호개정 2016.12.30.)

제3조(지원 금액) ① 학위취득 지원 학자금은 1인 1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 학자금 5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2. 학자금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50만원을 지원한다.
3. 학자금 100만원 이상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자금은 본인이 우선 납부한 후 교육주관부서(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교육비 납입 영수증, 재학증명서와 <별지 1호 서식>의 ‘학자금 신청서’,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

제4조(지원 횟수, 학습 및 학위 취득 기한) ① 전문학사, 학사, 석사와 박사에 한하여 1인 정규학기 최대 8회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수혜자는 최초 지원접수일로부터 전문학사는 4년, 학사는 6년, 석사와 박사는 7년 이내에 학습과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5조(지원 범위) ① 학위취득 지원 학자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정규학기 등록금으로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포함한다. 단, 학생회비, 원우회비, 논문작성비, 학술활동비 등은 지원학자금에서 제외한다.

② 장학금 수혜 등의 경우에는 실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삭 제 <2016.12.30.>

제6조(학자금 지원 중단) 학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 이후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 중단이 필요한 경우
2.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른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징계기록 말소시까지. 단, 징계처분은 제2조 제2호 단서 사유에 한한다.
3. 기타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학자금 환수 및 사후관리) ① 공단은 학위 취득 학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원한 학자금을 별표 1의 '환수금액 산정 기준표'에 따라 즉시 환수한다.

1. 사망,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학위 취득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제4조 제2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학위 취득 지원기간 중 의원면직하거나 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경우.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복무의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단, 사망,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복무의무기간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전체 학습기간의 50%로 한다. 다만, 한 학기는 6개월로 한다.
 - 나. 가목에서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학위 취득비를 지원받은 직원이 최종 지원학기가 종료된 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학자금 수혜자는 학업중단, 휴학 등의 사유 발생 시 인재원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학위 취득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이수 결과 보고서'를 인재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교육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교육위원회는 노사를 동수로 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학자금 지원 중단의 결정
2. 제7조의 학자금 환수 및 사후관리 사항
3.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직원은 제7조 제1항의 '복무의무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 1)(직제규정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직원학위취득지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학자금 신청서

신 청 인	사번	이름	소속부서	직급	입사 년·월	출생년도
교육과정 및 기관	학위	학교명	학년·학기	학과명		
교육비 및 계좌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에 한함)	원 ○○은행 ○○○-○○-○○○○○○○ (지원액: 50만원 미만 전액, 50~100만원은 50만원, 100만원 이상은 50%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최초 시작학기						
금번 신청학기						
학위 취득 예정시기						

서울시설공단 직원학위취득지원관리내규
<p><학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제2조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 입사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 학위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통지서 소지자로서 지원접수일 기준, 휴학 등 과정 중단 없이 과정 종료 후 전문학사와 학사는 수료 후 2년 이내, 석사와 박사는 4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직원은 제외 - 지원 접수일 기준인사규정 제24조3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 (징계처분은 반윤리적 원인에 한함) <p><학자금 지원 중단> — 제6조 학자금 지원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학위취득 기간 중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24조의3에 의한 징계기록 말소시까지 (징계처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도박,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한함) -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학자금 환수> — 제7조 학자금 환수 및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학위취득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최초 지원접수일로부터 전문학사는 4년, 학사는 6년, 석사와 박사는 7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학위 취득 지원기간 중 의원면직하거나, 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경우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의무기간 : 학자금을 지원받은 전체 교육기간의 50%) - 학업중단, 휴학 등의 상황 발생시 인재원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학위 취득 후 ‘교육이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현재 학위취득 과정에 진학 또는 재학 중으로 공단의 『직원학위취득지원관리내규』 상 학위 취득 지원 요건에 해당되기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 . . 신청자 ○○○ (서명)</p>

서울시설공단

서약서

소 속		직 급	
성 명			
교육기관 및 과정			
교육기간			

본인은 학위 과정의 교육 신청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시설공단 『직원학위취득지원관리내규』 를 준수한다.
2. 정해진 기간 내 학위 취득을 못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학위취득 기간 중 의원면직하거나 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경우,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를 내규 제7조(학자금 환수 및 사후관리)에 따라 일시불로 반환한다.
3. 복무의무기간의 준수, 휴학 등 신상 변동 시 즉시 보고 등 제반 의무 사항을 확실히 이행한다.

20 .

위 서약자 ○○○ (서명)

서울시설공단

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학 위 취 득 과 정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박사과정
보 고 자	소 속		
	직 급		
	성 명		
학 교 및 학 과	학 교 명	대학(교)	대학원
	학 과 명		
취득학위	학 위 명		
	학 위 번 호		
	학 위 일 자		
	논 문 제 목		
교육기간	입 학 일 자		
	졸업(학위취득)일자		

첨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본인은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교육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 ○ ○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제7조 제1항 관련) (신설 2016.12.30.)

환수금액 산정기준표

구 분	기 준	환수금액
	사망,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학위 취득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최초 지원접수일로부터 전문학사는 4년, 학사는 6년, 석사와 박사는 7년 이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한 학자금 × 1/2
	학위 취득 지원기간 중 의원면직하거나, 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경우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한 학자금 전액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 사망,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함 복무의무기간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전체 학습기간의 50%로 하며, 한 학기는 6개월로 한다.	지원한 학자금 × {(복무의무기간 - 학위취득이후 복무기간) / 복무의무기간}

비고

가. 복무의무기간 및 복무기간 산정은 월단위로 하되, 복무기간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